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10. 8., 김미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 10.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 11. 19.)

상정, 축조심사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 11. 18.)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1. 21.)

상정, 축조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 의원)

과거보다 줄어든 기회 속에서 현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 2023년 기준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들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함.

한편 사회진출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음. 2023년 기준 가족돌봄청년 약 10만명, 자립준비청년이 약 1만명으로, 가족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청년들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학업 시간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성년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치열한 경쟁 앞에서 또래 동년배들에 비해 더욱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최근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청년들을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실질적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들을 위한 전담 발굴·지원체계 구축 및 구체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고립·은둔

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안전망이 취약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위기청년 전담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궁극적으로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청년세대 내 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사회 모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생략(「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의원)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